



Tax & Legal Alert

제122/2025/ND-CP호 시행령에 따른
사전가격합의(APA) 적용 관련 위임 및 권한 이양에
대한 신규 규정

2025년6월

A large, stylized circular graphic with a green and blue gradient, resembling a globe or a lens, is centered on the page. It features a city skyline at night, with lights reflecting on water. The graphic is surrounded by a series of concentric circles and lines,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focus.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사전가격합의(APA) 적용에 관한 권한 위임 및 분권화에 대한 신규 규정



배경

2025년 6월 11일, 정부는 세무행정에서의 권한 위임 및 분권화에 관한 제122/2025/ND-CP호 시행령 ("제122호 시행령")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사전가격합의(APA) 제도도 세무행정 전반의 개편 방향에 맞추어 조정되었으며,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세원 잠식 및 이익 이전을 방지하는 효과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시행령 제126/2020/ND-CP호와 비교한 제122호 시행령상의 APA 적용 절차에 대한 분권화 관련 주요 변경사항

제122호 시행령은 시행령 제126/2020/ND-CP호("시행령 126")에 비해 사전가격합의(APA) 적용 절차에서의 권한 분권화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간결하게 정리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제122호 시행령 - 신규규정	제126호 시행령
(i)	양자 및 다자 APA의 경우, 더 이상 "국제협정 체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APA 체결에 대해 정부 및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	정부 및 국무총리는 국제협정 체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양자 및 다자 APA 체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ii)	양자 및 다자 APA의 경우, 재정부 장관이 협상 계획 승인, 의견 제시, APA 체결, 유효일 결정 등의 권한을 직접 행사한다.	재무부는 APA 초안을 정부 및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받고, 승인을 거쳐 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iii)	세무당국은 APA 내용에 대한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하고, 협상 계획을 수립하며, 필요 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세무당국은 승인된 협상 계획에 따라 납세자 및 외국 세무당국과 APA 내용에 대한 협의 및 협상을 수행한다.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APA 초안을 작성하여 재정부 장관의 승인 및 서명을 요청해야 한다.	세무총국(현 세무국)은 납세자 및 외국 세무당국과 APA 내용에 대해 교섭 및 협의를 진행하고, APA 초안을 작성하여 재무부 지도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가격합의(APA) 적용에 관한 권한 분권화 및 위임에 대한 신규 규정

2 제122호 시행령이행에 관한 규정

경과 규정: 본 시행령의 발효일 이전에 세무당국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정부 및 국무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은 양자 및 다자 APA 신청 자료에 대해서는, 양자 및 다자 APA의 승인 및 체결 권한이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본 시행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7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단, 본 시행령 제4장의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 122호 시행령가 APA 절차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제122호 시행령은 세무행정 개혁 및 이전가격 관리 측면에서의 진일보한 조치로, 다음과 같은 주요 혁신점을 포함하고 있다:

- **세정 정책 운영의 자율성,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제122호 시행령은 기존처럼 정부 또는 국무총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방식이 아닌, 재무부 장관에게 직접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세무당국이 국내외 정책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특히 국제 통합 심화 및 지속적인 제도 개혁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다.
- **행정 절차 개혁 가속화 및 기업 부담 경감:** 본 시행령에 따른 관리 권한의 분권화는 처리 기간 단축,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불필요한 사업 조건 완화에 기여하며, 이는 2021~2030년 행정개혁 로드맵과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업 친화적이고 투명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
- **APA 협상 절차의 신속화 및 이전가격 대응 역량 강화:** 재무부 장관에게 APA 승인 및 체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외국 세무당국과의 협상 절차가 간소화되고, 베트남의 대외 투자 유치 경쟁력이 향상되며, 이전가격 관리 측면에서도 행정 효율성이 제고된다.
- **국제 약속 이행의 일관성 확보:** 본 시행령은 기존 체결된 국제 조약 및 협정과 충돌 없이 설계되어, 베트남이 국제 파트너와의 신뢰 및 약속을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 협정 틀 내에서 세무당국의 권한을 강화하는 글로벌 추세와도 일치한다.



사전가격합의(APA) 적용에 관한 권한 분권화 및 위임에 대한 신규 규정

4 납세자가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

제122호 시행령에서 명시된 세무 행정상의 권한 분권화 및 위임, 특히 사전가격합의(APA) 제도와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공유드립니다:

- **베트남에서 APA를 적용하기에 유리한 시기 도래:** 제122호 시행령은 APA 승인 권한을 재무부 장관에게 직접 위임함으로써, 처리 절차를 단축하고 협상 속도를 높이며 국제적 관행과의 정합성을 강화하였다.이에 따라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APA를 적용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기가 도래하였다.
- **세무 리스크 감소 및 장기 재무 계획의 안정성 확보:** APA는 기업과 세무당국이 사전에 이전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향후 세무조사에서의 세액 추징이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이는 특히 국경 간 거래가 많은 대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 **관리 효율성 향상 및 컴플라이언스 자원 절감:** APA를 체결한 기업은 연간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가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인력 등 내부 자원을 절감할 수 있다.또한 명확한 세무 계획 수립을 통해 기업의 운영 전반에 있어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이 향상된다.
-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기업 신뢰도 제고:** APA 제도는 납세자의 투명성 및 법규 준수 의지를 보여주는 제도적 수단으로,이는 해외 투자자, 파트너, 각국 규제 당국 등으로부터의 신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Vietnam Korean Service Group

Deloitte Global Korean Services Group(KSG)의 일원으로서, 베트남 KSG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확장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및 언어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회계, 세무, 재무 자문 및 컨설팅을 포함한 폭넓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의 요구에 맞춰 설계되었습니다. 하노이와 호치민시에 상주하는 한국어 구사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 팀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는 한국 기업의 고유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 회계사

KSG Leader – HCMC office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류경석 회계사

Tax Director – Hanoi office

+ 84 96 227 8254

kyungry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

Deloitte's Tax & Legal Newsletter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Vietnam Tax Firm
of the Year
(2021 – 2024)**



Contact us



Bui Tuan Minh

Country Tax & Legal Lead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Pham Quynh Ngoc

Legal Partner
+84 24 710 50070
ngocpham@deloitte.com



Thomas McClelland

Tax Partn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Tran Quoc Thang

Tax Partner
+84 28 710 14323
qthang@deloitte.com



Vu Minh Ngoc

Tax Partner
+84 28 710 14323
ngocmvu@deloitte.com



To stay informed with our previous newsletters – visit:
[Deloitte's website](https://www.deloitte.com/vietnam)

Deloitte's Tax & Legal Newsletter is intended for reference purposes only and is not for distribution or resale.

Office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is a member firm of Deloitte Global. Deloitte Asia Pacific members and affiliates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 more than 100 cities in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In member countries, business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dependently by separate legal entities.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documen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nd i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therefore, no DTTL company, or any of its affiliates or subsidiaries and their employees shall be deemed to, within the scope of the content of this document, provide services or give opinions, professional advice for readers. This document does not constitute advice to the reader and shall not affect other advice provided by any employee of the Deloitte Foundation.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document does not apply to the individual cases of the enterprise.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ial or business situation, you should consult a professional adviso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made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and no member of the Deloitte Companies Network shall be liable for any damages, losses incurred directly or indirectly as a result of the reader's use, publication, dissemination of, or reliance on this material to act, inaction, or make any decisions.